

---

## 토지세목 고시 관련 면적 표시방법

---

### 1 질의

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(100㎡)가 국방부 (지분 30/100) 와 일반인 (지분 70/100) 의 공유이고 일반의 소유한 지분만 수용하여야 할 경우 면적 표시방법

### 2 회신

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유지에 대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고시할 때 편입 면적은 전체 면적 (질의 사례의 경우 100㎡) 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[2014.12.16. 토지정책과-8112]